

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금촌역~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내 대체 구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동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유재산(재경부)을 취득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대상토지: 파주시 금촌동 329-339번지의 30필지 2,281㎡
나. 토지위치: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에서 순달교 방향
다. 취득목적: 금촌역~ 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 사업부지
라. 취득예정가: 2,900,000,000원(㎡당 1,271,370원)
※ 추후 취득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취득
마. 취득방법: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익계약
(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)
바. 매 수 인: 파주시
사. 도시계획상 용도: 일반상업 및 일반주거지역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금촌역~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촌동 329-339번지의 30필지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국유재산관리계획

제9조(공공목적의 매각기준)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
나. 내용타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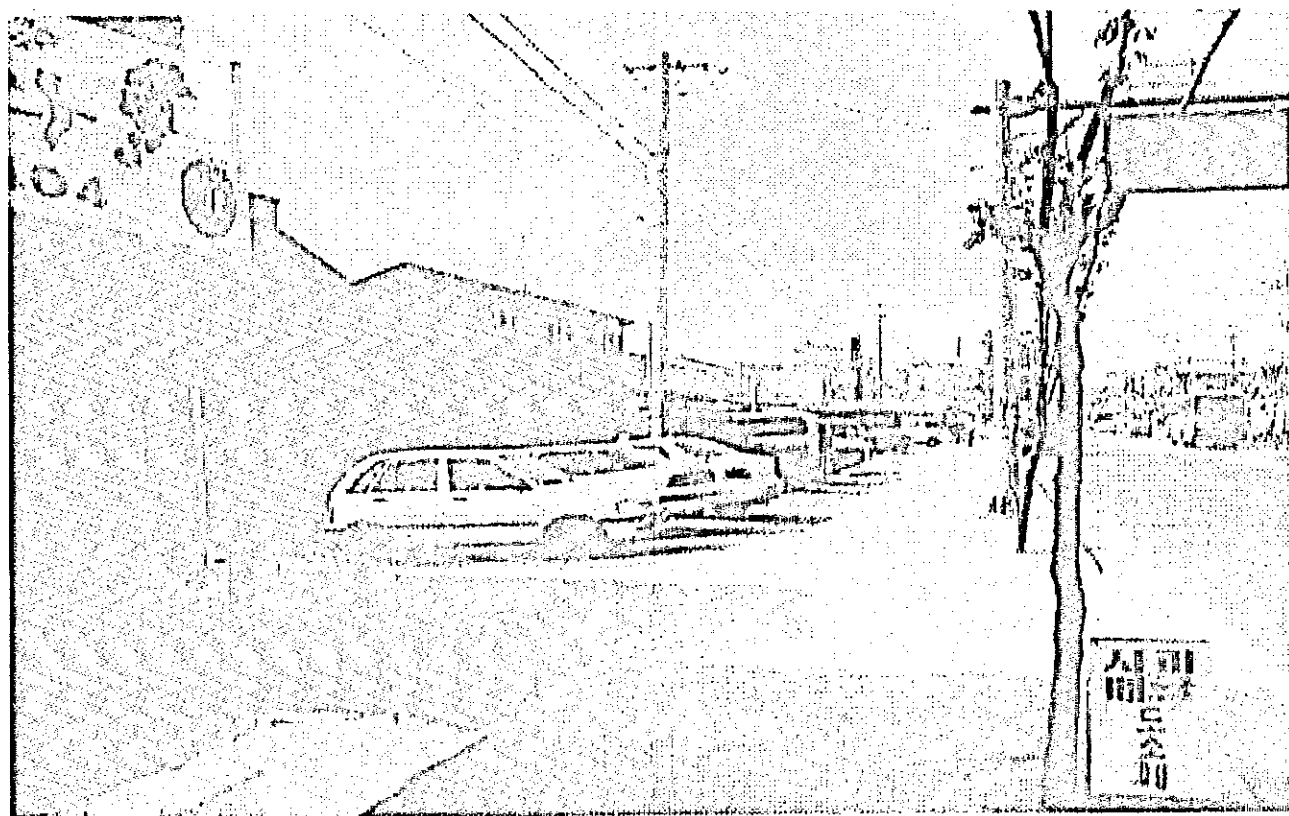
-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금촌동 329- 339번지의 30필지 금촌역~순달교간 구거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취득하여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저 하는 것으로 현재 동부지 대부분은 주차장 및 포장마차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 의해 생활쓰레기등이

마구 버려지거나 소각되어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동 부지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될 우려가 되므로 동 건을 취득하여 가로환경사업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금촌역~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부지 사진첩



(금촌역 방향으로 찍은 전경)



(금촌역 사거리에서 찍은 전경)